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과징금 규정 정비 등 >

■ 유동수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14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III . 검토의견:	3
1.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등 ..	4
2.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14
3.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등	20
4.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강화 등	3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28.
3. 회 부 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단순히 금융회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동시에 유발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며, 해킹 수법 또한 날로 고도화·조직화되고 있어 사전 예방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중대한 전자금융 사고 발생이나 법규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제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정보보호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보호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보안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권의 정보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안 제21조의2제1항, 안 제21조의2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 1) 대표이사의 책임 하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적극적으로 보안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표이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임을 명확히 함.
-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나.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안 제21조의7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마련함.

다. 과징금 규정 정비(안 제46조)

- 1)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누설·목적 외 활용, 침해사고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그 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 등 발생의 경우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 2)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함.

라. 이행강제금 마련(안 제46조의3 신설)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명령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권한 강화 등 (안 제21조의2 등)

-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
 -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임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해임할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u><신설></u>	제21조의2(대표이사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책무)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① ~ ③ (생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제2항----- -----.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u>안전성</u>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1. ----- - <u>안전성</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u>안전성</u>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 <u>안전성</u> ----- ----- -----
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삭제></u>
<u><신설></u>	⑥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신설></u>	⑦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

현행	개정안
	<u>보보호최고책임자가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⑧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신 설></u>	<u>⑨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u>
<u><신 설></u>	<u>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⑪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⑫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제7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	제51조(과태료) ① ----- ----- -----

현행	개정안
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간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신설> (중간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 ----- -----. (중간 생략) ② ----- ----- -----.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2제2항 또는 제3항----- ----- ----- 3. 제21조의2제4항----- 제5항----- ----- ----- ----- 3의2.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명한 자 (중간 생략) ③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5. ~ 12. (생략) ④ (생략)	<u>4의2. 제21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u> 5.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표이사의 책임 명확화

□ 개정안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대표이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현행법 제21조의2제1항¹⁾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임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임을 명시하고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6. 3. 10.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²⁾에도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³⁾에서도 대표이사등에 대해 내부통제 등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무를 부여하면서⁴⁾, 총괄적인 관리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종 책임자로서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자금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10.] [시행일: 2026. 9. 11.]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2.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대표이사등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4. 각 임원이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8. 그 밖에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4) 대표이사 등이 총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영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두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금융회사의 경우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를 두어야 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법률 상으로는⁶⁾ 반드시 주식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법상 회사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전자금융업 등록을 할 수 있고,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이사회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③ 제28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자: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제3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한편, 현행법 제3조7)는 법률의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뿐 아니라 대표이사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맞추어 법 제3조3 항제3호에서도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 개정안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안 제21조의2제6항

7)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 ②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융회사

2.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회사

3.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신설), 이사회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현재에도 금융위원회 고시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⁹⁾ 이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보고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보완¹⁰⁾이 필요해 보임.

8)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8조의2(정보보호위원회 운영)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며, 위원은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전산운영 및 개발 관련 부서장, 준법업무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3에서 정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전산보안사고 및 전산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2제1항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④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최고경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 2. 기준으로 전자금융업자 중 3개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0) <참고 입법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③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신분 보장 및 독립적 업무 수행 보장)

- 개정안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임기(2년) 및 임면절차·보수 등의 측면에서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제21조의2 제7항 및 제11항의 불이익 금지, 독립적 업무 수행 보장, 자료요구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¹¹⁾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¹²⁾ 등과 유사한 내용이고,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내부통제기준)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그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21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임면, 임기, 보수기준에 관한 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¹³⁾에 따른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유사함.

다만, 개정안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난 2026. 3. 10.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면 시 이사회 의결 절차를 신설하면서, 해임할 때에도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

1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이하 생략)

지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 금융사고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우와 다르게 강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임면 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임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이 아닌 다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임.

2.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안 제21조의7 신설 등)

- 개정안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정보보호부문의 지배구조, 예산, 조직, 인력현황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자산,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를 의무화하며(안 제21조의7 신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안 제5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②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제21조의7의 정보보호 공시
<신설>	제21조의7(정보보호 공시)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1. 정보보호부문에 관한 지배구조
	2. 정보보호부문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현황
	3. 그밖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 -----

현행	개정안
를 부과한다. (중간 생략) <신설> (이하 생략)	-----. (중간 생략) 5의2. 제21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보안과 관련한 인력, 예산, 평가 및 점검 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임.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게는 금융회사 등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과 정보를 제시하고, 금융회사 등에게는 정보보호를 회사 경영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여 포함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이용과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것임.

□ 정보보호 분야 공시와 관련해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적인 규율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자 또는 매개자에게 정보보호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¹⁴⁾

1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통령령으로도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정보보호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왔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면,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고 있는 경우는 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신설하는 것에는 중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복 등의 문제는 없음. 다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이용자 보호 등을 특별히 강화하려는 취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차별성이 있도록 제도 운영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반적인 정보보호 공시 항목에 더하여 금융 보안 관련 사항을 추가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한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¹⁵⁾에서는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또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보다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 금융사고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여타 정보보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하여 보다 강화된 규율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1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3.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등(안 제46조)

□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사유로 △침해사고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중대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억원”에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로 하며, 영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시 고려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u>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제46조(과징금)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신설>	1. <u>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u>
<신설>	2. <u>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u>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u>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3. 그 외 업무 영향, 이용자 피해 등이 중대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 ----- ----- -----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노력

현행	개정안
<신설> ④·⑤ (생략) <신설> <신설>	4. <u>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u> 5. <u>피해 확산 방지, 이용자 피해 회복 노력 등 사후 조치</u> 6. <u>업무정지기간(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⑧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안전성 확보의무(제21조제1항)를 위반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한 안전성 기준(전자금융감독규정)(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외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법 제51조제1항),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43조제2항제1호).

< 과징금 관련 규정 비교 >

구 분	현 행	개정안
부과 대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부과 사유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①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로 사용	① (좌동) ②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③ 그 외 업무영향, 이용자 피해 등이 중대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과징금 상한액	50억원 이하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매출액 산정 자료 거부 및 거짓 자료 제출시, 유사 회사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 추정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 곤란시, 20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	5천만원 이하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
과징금 부과시 고려사항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노력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 · 피해 확산 방지, 이용자 피해 회복 노력 등 사후 조치 · 업무정지기간 (업무정지대체 과징금)
징수	국세청장에 위탁 미납시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름	

□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사유를 추가하여 정보유출 등의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매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 및 이를 통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도모하며, 과징금 부과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과징금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한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1) 과징금 상한액 규정방식 변경

□ 현행 과징금의 상한은 50억원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상한액을 명시하지 않고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달리 책정되므로 제재의 실효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등의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16)처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8)과 같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 환수 등의 측면에서 비례성을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 1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17)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기록·보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意的 범위를 넘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意的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과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과징금 부과 사유 추가

□ 첫째,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사유를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2호)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제3호)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밖에 업무 영향, 이용자 피해 등이 중대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안 제2호는 침해사고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의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정보법」 제42조의2¹⁹⁾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의무(제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조²⁰⁾)를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 중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서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현행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의 경우 50억원 상한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3%)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²¹⁾.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고, 이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5, 2025. 7. 14.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확보의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제재에 대해서도 이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적합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46조제8항에서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²²⁾보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두 법의 적용에 관한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협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둘째, 개정안(제 46조제1항제3호)은 과징금 부과 사유로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외 업무 영향, 이용자 피해 등이 중대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도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데, ‘업무 영향과 이용자 피해 등이 중대한 사고’라는 사유는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보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과징금 부과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입법례²³⁾도 있으나, 과징금은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어떤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²⁴⁾.

2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4)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징수 주체

참고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등이 장시간 중단되거나 금전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해당 내용을 과징금 부과 사유를 구체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강화 등(안 제46조의3 신설 및 안 제51조 등)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의 이행실태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1조의3제3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며(안 제5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및 제51조제2항제4호 삭제),

취약점 분석·평가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6조의3).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채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채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② (생략)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u>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u>	③ ----- 제1항----- ----- ----- ----- 점검할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46조의3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조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현행	개정안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10.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u>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u> ④ <u>금융위원회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⑤ <u>금융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⑥ <u>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1조(과태료) ①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u> 1의3. <u>제21조의3제3항, 제39조제3항-</u> -----

현행	개정안
40조제3항·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u>출석요구</u>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중간 생략)	----- ----- <u>출석요구, 점검</u> ----- ----- (중간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간 생략)	② ----- ----- -----. (중간 생략)
4. <u>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u> (이하 생략)	<삭 제> (이하 생략)

- 현행법 제21조의3²⁵⁾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②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③ 금융위원

25)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가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보완조치 이행실태 점검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음.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관련 의무 위반시 제재 비교표 >

위반 행위	제재 등	
	현행	개정안
①-1.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u>2천만원</u> 이하 과태료	<u>5천만원</u> 이하 과태료
①-2.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의 금융위원회 미보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 보완조치 이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미이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좌동)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u>5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u>
③ 보완조치 이행실태 점검의 거부·방해·기피	(신설)	<u>5천만원 이하 과태료</u>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제도는 악성코드 유포, DDoS, 랜섬웨어, 취약한 웹·모바일 앱 등을 통한 침투 등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지속화되면서, 단발성 점검이나 사고 후 대응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전자금융거래 인프라에 대한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2013.

5. 22. 법 개정, 2014년부터 평가 실시).

○ 그러나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①-1), 그 결과 및 보완조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이행실태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③),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제재 수준이 미흡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취약점 분석·평가 및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이 최근의 정보 유출 사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였음²⁶⁾.

□ 이에 개정안은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이행강제금까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에게 최소한의 보안수준을 강제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6) 2025년도 정부위원회 국정감사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질의내용 참고(2025. 10. 20., 2025. 10. 21., 2025. 10. 27.)

- 첫째, 개정안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보완조치 미이행 또는 법 제39조제6항제1호²⁷⁾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²⁸⁾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법 제39조제6항제1호는 이 법 위반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임.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조치 미이행 외의 다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지만, 보완조치 미이행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차이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한 법 제3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 보이나, 개정안은 전자금융기반시설 등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인 보안상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침해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타 시정명령 대상과 구분하여 보완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7)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감독 및 검사)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2017. 4. 18.>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8)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을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전적 제재를 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임.

□ 둘째, 개정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시정명령의 경우에도 특정 시정조치를 이행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최초의 이행명령’을 당초 시정명령으로 볼 것인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안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으로 볼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밖에, 현행 「행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²⁹⁾은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상 일반 규정이 적용되므로 중복되는 규정(안 제46조의3제2항·제3항·제5항 등)은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29)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과태료 부과 규정인 안 제51조제1항제1호의3은 제21조의3제3항과 제39조제3항의 위반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위반 사항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104
